

# 교원인사규정

제정 1986.12. 3	개정 2000. 1.14	개정 2009. 7. 1	개정 2015. 9. 1	개정 2020. 2.21
개정 1989. 7.24	개정 2001. 6. 1	개정 2010. 3. 1	개정 2016. 4.21	개정 2020.12.16
개정 1992. 2.24	개정 2002.10. 8	개정 2013. 3. 1	개정 2016. 9. 7	개정 2023. 7.10
개정 1993. 2.25	개정 2005. 1. 1	개정 2013. 3.26	개정 2017. 1.19	개정 2024. 4. 1
개정 1993. 3. 1	개정 2006.11.16	개정 2014. 5. 1	개정 2018. 6.21	
개정 1994. 3. 1	개정 2008. 3. 1	개정 2014. 6. 9	개정 2019. 1. 1	
개정 1994. 5.24	개정 2008.11. 1	개정 2014.10.16	개정 2019. 8. 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교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 각 직위의 전임교원에게 적용하고, 비전임교원에게는 이를 준용한다.

② 방문교수, 대우교수, 연구교수, 기금교수, 겸직교수, 등 비전임교원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전임교원 인사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

③ 조교에 관한 사항은 조교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④ 강사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사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 이라 함은 본 대학 각 학과(이하 각 학부와 대학원 등을 포함)에 소속하여 정규의 교육, 연구, 학생지도 및 보직업무 등을 담당하며, 재임용 및 정년보장심사 등을 통하여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각 직위의 교원을 말한다.
2. “비전임교원” 이라 함은 본 대학에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
3. “강사” 라 함은 교과목의 강의를 위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4. “임용” 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재임용, 전보, 겸임, 파견, 보직임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5. “승진” 이라 함은 하위직위에서 상위직위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교원의 직위) 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13.3.1)

제4조(겸직금지) ① 교원은 보수를 수반하는 다른 기관의 전임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교원이 다른 학교에 출강 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직을 위촉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

에서 소속부서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겸직 승인 시, 겸직의 필요성, 기간의 적절성, 대상 기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

④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그 해에 해당 업체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받은 보수 일체를 다음해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2019.1.1)

1. 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⑤ 교원이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창업 관련업무에 대하여 1년간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1)

제4조의2(겸임) ① 총장은 대학내의 학제간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전임교원을 타 학과 또는 (특수)대학원 소속으로 겸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명된 교원을 “겸임교수”라 한다.

② 겸임교수는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동의와 겸임학과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임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임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③ 겸임교수가 겸임학과의 강의를 담당할 경우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학과 및 겸임학과의 강의시간을 합하여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④ 겸임교수는 겸임으로 인해 소속학과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겸임학과의 주임교수는 학과업무에 대하여 학과소속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다.

⑤ 겸임교수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대학원 겸임교수가 강의에 참여할 경우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강의 책임시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의3(과건근무) 총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과건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 1학기의 말일은 8월 31일, 2학기의 말일은 익년도 2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16.4.21)

②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대학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만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탁월한 업적이 인정된 정년보장 교원을 대상으로 임용하는 정년연장 조기결정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

정:2024.4.1.)

## 제 2 장 임 용

제6조(임용권자) 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3.1.)(개정: 2016.9.7.)

제7조(임용원칙)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정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신규채용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교원의 임용사정은 그 자격, 업적, 근무성적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제8조(교원의 자격) 각 직위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다만, 뛰어난 업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 및 연구경력년수가 10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
2. 부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 및 연구경력년수가 5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
3. 조교수는 박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 (개정: 2013.3.1)
4. (삭제: 2013.3.1)

제9조(임용기간 등 계약조건) ① 교원의 임용기간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만, 타 대학 정년보장교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21)

(개정:2018.6.21)

다. 조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삭제: 2013.3.1)

2. 급여 : ‘교원연봉제운영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학부)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육·연구실적 및 봉사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임기의 기산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일로부터 한다. 다만, 임용기간이 학기중에 만

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삭제)

제9조의2(재임용) ① 각 직위별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재임용 : 교수승진 심사기준에 따른다.
2. 부교수 재임용 : 교수승진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4.21)
3. 조교수 재임용 : 학과별로 정한 재임용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4.21)
4. (삭제: 2013.3.1)

② 제9조 제1항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학과인사위원회 심의(주임교수 추천 포함)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그 임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에서 정한 직위별 최고근무연한을 초과하여 임용기간을 갱신할 수 없다. (개정: 2016.9.7.)

③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기간이 정하여진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1)

④ 전항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교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과 주임교수를 통해 총장에게 재임용심의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1)

⑤ 학과인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1)

⑥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9조의3(정년보장) 전임교원의 정년보장 임용은 교수승진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4.21)

제10조(특별임용) ① 총장은 본 대학에서 정년퇴직한 교수로서 재직중 교육, 연구 및 봉사활동이 뛰어난 경우 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16)

② 총장은 탁월한 교육 및 연구업적을 성취하였다고 인정되는 전임교원 또는 교외인사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좌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대학 정년보장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또는 학과특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1.1.)(개정: 2014.5.1.)(개정:2017.1.19.)

③ 명예, 석좌교수,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학과특임교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1.)(개정: 2014.5.1.)(개정:2017.1.19.)

제11조(연수계산) 교육 및 연구경력년수 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통산할 수 있다.

2.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동시에 교육과 연구에 종사한 경우에는 1개 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의 년수만 계산한다.
3.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각각 5년 또는 2년간 연구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 정할 수 있다.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5.9.1., 2023.7.1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 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10.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1.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15조(구비서류) 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소정양식) 2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2부
5. 기본 증명서 1부
6.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부
7. 주민등록등본 2부
8. 채용신체검사서 1부
9. 신원진술서 3부
10. 인사기록카드 2부
11. 서약서 1부
12.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
13. 교직원임용신고서 1부
1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 3 장 승 진

제16조(승진최소근무년수) (삭제: 2016.4.21)

제16조의2(승진임용절차) 교원의 승진은 학과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개정: 2008.3.1)(개정: 2016.9.7.)

제17조(승진임용시기) 교원의 승진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18조(승진요건) ① 교원의 승진은 해당직위의 다음 각 호에 정한 최소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1. 교수 승진

가. 강의실적분야에서는 부교수 재임기간 중 3과목 이상의 강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3과목 중 적어도 1개 과목은 대학원 과목이어야 하며, 강의에 대한 내용의 충실도 및 교육평가에서 만족할 만한 평가를 얻어야 한다.

나. 연구실적분야에서는 부교수 재임기간 중 박사를 배출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심사 게재된 논문(또는 특허)을 발표하였거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국제수준의 연구(학술연구/산업연구) 실적을 이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우수 연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 내외의 특별한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기 조건을 신축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4.21)

다. 봉사실적분야에서는 부교수 재임기간 중 대학의 발전을 위한 업무, 학회활동 혹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

## 2. 부교수 승진

가. 강의실적 분야에서는 조교수 재임기간 중 2과목 이상의 강의경험이 있어야 하며 1개 과목은 대학원 과목이어야 하고 강의에 대한 내용의 충실도 및 교육평가에서 만족할 만한 평가를 얻어야 한다.

나. 연구실적분야에서는 조교수 재임기간 중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심사 게재된 논문(또는 특허)을 발표하였거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국제수준의 연구역량(학술연구/산업연구) 실적을 이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서 국내 우수 연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내외의 특별한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기조건을 신축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4.21)

다. 봉사실적분야에서는 조교수 재임기간 중 대학의 발전을 위한 업무, 학회활동 혹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

## 3. (삭제: 2013.3.1)

② 교수 승진 심사 시에는 국내외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5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본인 추천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6.9)(개정: 2016.4.21)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근무연한) ① 정년보장을 받지 않은 전임교원이 동일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고 근무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 제한 없음

2. 부교수 : 7년(개정: 2016.4.21)

3. 조교수 : 신규임용의 경우 4년, 재임용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개정: 2016.4.21)

## 4. (삭제: 2013.3.1)

②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한 부교수 및 조교수는 재임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3.1)(개정: 2016.4.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 공백기간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유보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3년 이내로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3.26.)(개정: 2016.4.21.)(개정: 2016.9.7.)

제22조(승진임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정 직 : 18개월

- 감 봉 : 12개월

- 견 책 : 6개월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 제 4 장 인사위원회

제31조의2(교원인사위원회) 본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제58조에 정한 사항
2. 교원의 승진, 임용, 전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원 및 연구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개정: 2008.3.1.)
4. 교원 정년 보장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연구년 승인에 관한 사항
6. 업적평가 및 연봉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3.1.)
7. 교육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
8. 교원 인사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3.1.)
9. 기타 교원 인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

제31조의3(학과인사위원회) ① 각 학과에는 주임교수가 위원장이 되는 학과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교원의 채용, 승진 등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은 주임교수가 임명하며 교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부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단, 소속학과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해당학과 주임교수는 교무처장의 동의를 얻어 타 학과 교원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④ 인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사조직개편 등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총장과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학과 주임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학과인사위원회의 역할을 위임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 제 5 장 보 수

제32조(보수) 전임교원의 보수는 ‘교원연봉제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 제 6 장 신분보장

제33조(신분보장) 교원의 신분보장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4조(당연면직)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사망한 때
2. 정년에 달한 때
3. 제14조 각 호에 해당될 때, 단 제14조 제5호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휴직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하지 아니할 때
5.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2008.3.1.일부 개정)
6.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023.7.10. 신설)

제35조(의원면직) 본인이 면직을 청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35조의 2(의원면직 신청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총장은 교원이 제35조의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7.1.19.)(개정:2020.2.21.)

1. 제3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법인 정관 제66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은 법인 정관 제51조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2.21.)
-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

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0.2.21.)

④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0.2.2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제36조(휴직) 교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7조(직위해제) 교원의 직위해제는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 제 7 장 상 별

제38조(포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
- ② 포상은 표창 및 상장으로 구분하며 별도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징계)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할 수 있다.

1. 교육관계법령, 정관 및 본 대학의 제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4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0.2.21.)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월봉액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누우치게 한다.

제41조(징계절차) 징계의 절차, 재심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2조(삭제)

## 제 8 장 보 칙

제43조(삭제)

제43조의2(이의신청 및 심사) ① 교원은 학과인사위원회의 임용, 승진, 정년보장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학과(학부)의 장에 의한 연봉평가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교원인사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③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원인사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한다. (신설: 2009.7.1)

제44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교원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 또는 기타의 예를 준용한다.

제45조(경과조치) (삭제: 2002.10.8)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2월 24일 개정하여, 1991년 10월 17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 2.25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 3. 1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 3. 1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 5.24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1.14부터 개정 시행하며,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경과조치) ① 제9조 제1항 제 1호 다, 라 목의 임용기간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신  
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부터 재직중인 조교수와 전임강사는 재임용시부터  
적용한다.  
② 1998학년도 제1학기 이후 부교수의 재임용시 2002년 8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재임용한 경우는 재임용일로부터 7년까지 재임용한 것으로 본다.  
③ 부교수의 정년보장임용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9조의 2(재임용) 제3항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  
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조 제3항은 200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신규임용되는 교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승진임용시기)는 모든 교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문사회학부 소속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1일 이후 임용되는 교원에게도 개정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신규임용되는 교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부터 재직 중인 조교수 및 부교수는 개정 전과 개정 후 규정 중에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6년 4월 21일자 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6년 4월 21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